

문서번호	감사실-478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1.25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감사실장	감사직무대행	이사장직무대행
협 조				

『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』 내부비리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운영(안)

2016. 1

『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』 내부비리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운영(안)

비리행위 자진신고를 통해 사전 부패예방을 도모하고,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 및 자진신고자에 한해 최대한 관용하여 조직의 신뢰회복, 청렴공단을 달성코자 함.

※ 관련근거 :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66조(책임의 감면 등)
『부패행위 신고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』 제14조(책임의 감면 등)
『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』 제27조(징계) ③항(자진신고시에는 처분양정 감경)
『비리양심신고제 운영계획』 (감사실-2177호, 2011.07.20.)

신고기간 : `16.2.01 ~ 3.31(2개월간)

신고대상

- ①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·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
-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(운영) 등 인사관련 비리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
- ③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·조례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④ 예산사용, 자산취득·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·조례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⑤ 위 3,4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등
- ⑥ 근무 중 음주, 무단이석, 지각 등 복무기준 위반 행위
- ⑦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
 - ☞ 사기업체의 사외이사(금지사항), 재건축조합 이사,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 등(허가사항)
- ⑧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훼손 행위(성희롱, 언어폭력 등)

신고방법

- 방문 · 전화 · 우편(일반/전자) · 홈페이지(신고센터 접속) 등
 - 신고시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

- ✓ [방문] 청사 13층 감사실 부패방지팀 ✓ [전화] 02-2290-6234
- ✓ [전자우편] 수신인 "감사실"
- ✓ [홈페이지] 공단 홈페이지 접속(www.sisul.or.kr) → 메인화면 "부패·공익신고 센터" 클릭 → "공직자 비리신고" 클릭 → 신고내용 작성 (실명신고)

향후예정

- 운영취지 홍보 : 게시판 게시 및 공문 메일 발송, 부서별 교육 실시 등 전직원 홍보
- 운영결과 조치 : 부패행위 자진신고자에 한해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양정 감경 또는 면제

☞ 신고기간 중 첩보수집 활동 병행, **이후 적발건에 대해서는 엄중처벌**(연대책임 확행)

[2015년 운영실적(참고)]

- 신고기간 : '15.1.07 ~ 2.28(53일간)
- 신고대상 : 금품 · 향응 · 편의 등 수수행위, 인사관련 비리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
- 신고방법 : 홈페이지(신고센터), 전화, 우편(일반/전자), 방문 등
- 접수 및 조치결과 : 총 6건(홈페이지4건, 전자우편2건)
 - 공영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량을 회차시간 내 출차 후 후진하여 주차, 최종 출차시 관제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차요금 면제(4건)
 - 지하도상가 미화원 및 경비원이 입점 점포를 청소해주는 대가로 라면, 쌀, 금품 수취(2건)
 - ☞ 신고자 : 신분상 조치는 면제, 향후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감사실장명 주의 촉구
 - ☞ 미신고자 : 유사사례 조사하여 8명 경징계